

##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### ◇ 행정규칙명

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

### ◇ 제·개정 이유

민원인 또는 지인의 대리인 소개요청과 관련하여 우리청 직원이 선의로 대리인을 소개한 후, 해당 대리인이 연고관계를 선전하거나 심사·심판 건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될 우려가 존재하여, 자신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(심사)과 관련하여 민원인,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인 소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
### ◇ 주요내용

#### 1. 변리사 또는 특허법률사무소 등의 소개금지 규정 신설(제5조의7)

가. 자신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(심사)과 관련하여 직원의 이권 개입 등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특정 변리사 및 특허 법률사무소 등을 추천·소개할 수 없도록 행동강령 개정 추진